

사이버 選舉, 現在와 未來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마치고 -

권 선 영*

問題 提起 : 왜 사이버 選舉인가 ?

- (1) 措置別
- (2) 類型別
- (3) 地方警察廳別

I. 사이버 選舉事犯이란 ?

- 1. 사이버 選舉事犯의 概念
- 2. 사이버 選舉事犯의 類型
 - (1) 候補者 誹謗
 - (2) 事前選舉運動
 - (3) 輿論調查結果 公표금지 등
 - (4) 해킹 등을 이용한 사이버 選舉運動 妨害 行爲
 - (5) 其他 개인정보 불법 유출 행위 등

II. 2002 地方選舉와 사이버 選舉事犯

- 1. 概 觀
 - (1) 사이버 政治 現實
 - (2) 경찰의 對備
- 2. 사이버 選舉事犯 分析

III. 사이버 선거사범 團束上 問題點과 補完策

- 1. 團束上 問題點
 - (1) '후보자 비방' 判定基準 模糊
 - (2) '인터넷상 공약사항 게시'의 事前選舉運動 處罰 問題
 - (3) 時代에 뒤떨어진 公選法 規定
- 2. 補完策
 - (1) 健全한 사이버 文化 定着으로 公明選舉 土臺 마련
 - (2) 사이버상 選舉運動 最大限 保障
 - (3) 인터넷 매체의 活動 保障

맺음말 : 우리의 未來이기 때문이다.

* 警察廳 搜查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감)

問題提起 : 왜 사이버 선거인가?

지난해 말 현재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한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基盤設施의 發展은 더 이상 사이버 공간을 假想空間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해 주었다. 거의 모든 政黨·국회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한 政見發表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에 따라 사이버 정치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政治的 意思傳達 등 비정치권의 직·간접적 參與가 강화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점차 사회적 주의와 관심을 불러왔고,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그 過熱 樣相도 누차 警告된 바 있다.¹⁾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意味를 부여한다면, 크게 ‘사이버 공간을 건전한 토론의 場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사이버 文化 造成’을 서로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만큼 사이버 선거에의 關心度가 크게 증가한데다 작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 관련 법제도 改正’의 발판을 만들어준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후보등록 기간이었던 5. 28과 29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9천 3백만 건의 接續 Hits를 기록²⁾하는 등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보다 인터넷 사용자들간의 선거 관심도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不·脫法 行爲도 늘어 2001. 3. 1~2002. 6. 30³⁾ 동안 적발한 사이버 선거사범의 數가 462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法律上 사이버 선거의 意味, 그 許容範圍와 限界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행된 금번 지방선거는 인터넷 토론회의 적법 여부⁴⁾, 선거운동기간전 인터넷 홈페이지 公約事項 揭載의 불법 여부⁵⁾ 등 많은 논란거리를 피할 수 없었다.

0) ‘탈·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극성’(연합뉴스, 3. 19), ‘경선 판개는 사이버 폭력’(동아일보, 4. 3), ‘지방선거 사이버 혼탁’(동아일보, 5. 25), ‘흔들리는 공명선거’(KBS 취재화일, 6. 9) 등.
 0) 중앙선관위 보도자료(2002. 5. 31), 우리나라 총 인구 48,107,424명(2002. 5. 22 현재) 가운데 선거인은 34,744,232명(72.2 %).
 0) 경찰은 선거사범처리기간인 6. 14 ~ 6. 23(10일간) 이후에도 계속 관련 사건을 처리, 시일의 변동에 따라 관련 통계 증감이 있다. 본 소고는 6. 30 기준 통계에 근거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0) 2002. 1월 ‘피플475닷컴(www.pepole475.com)’과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는 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초청, 인터넷 대담을 실시하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이후 III. 2. 보완책에서 詳說.
 0) 대구참여연대와 한국 청년연합(KYC)은 동 출신 후보자들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구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단순히 후보선출사실을 알리는 행위’였다고 이의 제기(5. 17, 연합뉴스)

사회적 관심이 부각된 사이버 선거와 관련, 본 小考를 통하여 먼저 사이버 선거사범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는 것인가에 관해 실정법을 根幹으로 살펴보고(Ⅰ), 금번 제3회 지방선거 당시 한국경찰의 團東實態를 점검·분석한 다음(Ⅱ), 추후 선거에 대비하여 사이버 공간상 선거활동의 場을 얼마만큼 열어주어야 하고 또 根絶되어야 하는 不法 선거행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效果的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Ⅲ)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 사이버 選舉事犯이란?

1. 사이버 選舉事犯의 概念

‘인터넷’은 인간의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상으로 타인의 힘을 빌려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행하고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日常 道具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順機能과는 달리, 인터넷 부작용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즉 ‘컴퓨터가 犯行의 手段 또는 目的이 된 모든 일탈행위, 즉 컴퓨터의 機能에 의해 동 수단과 목적이 결정된 범죄⁶⁾로 정의되는 유형의 逆機能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으며, 선거사범 자체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 사범을 일컫는다고 좁게 해석할 경우 ‘컴퓨터⁷⁾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동 법률 위반 사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공선법이 1994. 3. 16. 법률 제 4739호로 제정되어 2002. 3. 7까지 13번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2~3년간 급속도로 발전되어 새롭고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공선법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이버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⁸⁾

0) 프랑스 국립경찰의 ‘전산·통신기술 관련 범죄대책 중앙사무소(O.C.L.C.T.I.C.)’의 사이버 범죄 정의로 관련 사항은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www.interieur.gouv.fr) 참조

0) ‘computer’는 프랑스 O.C.L.C.T.I.C.의 ‘사이버 범죄’ 개념에서와 같이 사무자동화기기로서의 PC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타인과의 의사 소통·자료 열람 등 가상공간을 형성하는 컴퓨터를 일컫는다.

0) 공선법 제82조의 3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

2. 사이버 선거사범의 類型

(1) 候補者 誹謗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事實을 적시,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후보 등의 인적사항 도용, 음해성 역정보 살포행위,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⁹⁾, 명예훼손 행위를 포함한다.

匿名性を 확보할 수 있다는 사이버 공간 특성상 게릴라식 비방 글 게시행위가 사이버 선거사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의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여러 개 게시하는 일명 ‘도배’, 여러 홈페이지에 하나의 ID로 비방 글을 게시하는 ‘비방꾼’, 그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홈

페이지에 여러 ID를 이용하여 글을 올리는 ‘지능형’ 등으로 변모하였다.

(2) 事前選舉運動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전일로 정해져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또한 정당의 정강·정책,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E-mail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¹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¹¹⁾에는 정당의 정강·정책·후보자의 경력·활동사항·정치적 소

방·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을 통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선법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동 법 제62조 또는 제63조(벌칙)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0) 공선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정형을 ‘후보자 비방’보다 중하게 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선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비해, 동 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 그 형을 중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공선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동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 제61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0) 선거운동기간위반은 공선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 중앙선관위에서는 단순한 소신 피력에 불과한 지, ‘앞으로 *장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의 게시인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한 ‘소신 피력’과 ‘공약사항 게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後述.

신·강연 내용 등을 특정 정보저장 장소에 저장하여 두고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또는 선거에 관하여 單純한 意見을 開陳하거나 意思를 表示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련 정보 저장 장소에의 接近 方法에 관한 안내문을 컴퓨터 통신상 특정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適法하여 언제나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輿論調查結果 公표금지 등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經緯와 그 結果를 公표하거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공선법 제108조 제3항과 제4항이 규정하는 輿論調查의 方法을 違反한 경우를

포함한다.¹²⁾

(4) 해킹 등을 이용한 사이버 選舉運動 妨害 行爲

해킹을 통해 후보자·정당 등의 홈페이지 서버에 침입, 자료를 삭제·변경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障礙를 發生시키는 행위, 선거 관련자의 PC에 침입하여 파일을 열어보거나 삭제·변경·오작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E-mail을 열어보는 등 비밀 침해 행위, 그리고 데이터를 다량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후보자·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정상적인 열람·이용을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의미 없는 게시물을 다량으로 올리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관련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내어 E-mail을 열어보거나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¹³⁾

0)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전화번호·조사자 신분을 밝혀야 하고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公表 또는 報道할 경우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피조사자 선정방법·표본의 크기·조사지역·표본 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고, 이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에 위반할 경우 공선법 제256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6조 비밀침해, 제366조 재물손괴 또는 정통방법 제62조 4호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 5호 대량의 데이터 전송 등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망 장애유발,

(5) 其他 개인정보 불법 유출 행위 등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결탁, 회원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해킹 등에 의한 인터넷 사업체 회원정보 유출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사용토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個人情報의 提供·賣買 行爲가 여기에 포함된다.¹⁴⁾

그리고 선거 출마자에게 유권자 정보제공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選舉人 名簿 寫本 交附制’를 악용,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¹⁵⁾도 해당된다.

기타 사이버 선거사범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¹⁶⁾, 선거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각 후보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였을 경우¹⁷⁾,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 자신의 저서 등 정보통신 관련 정보를 내려(down) 받도록 하는 행위¹⁸⁾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인터넷 등 컴퓨터 관련 분야의 발전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의 한 행태로서 새로운 형태의 위·탈법 행위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체제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껏 논의된 사이버 선거사범 이외에 선거 보안 프로그램 유출 등 國家의 選舉業務 妨害事犯도 관계 법률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II. 2002 地方選舉와 사이버 選舉事犯

1. 概 觀

(1) 사이버 政治 現實

금번 6. 13 지방선거 출마자는 10,918 명으로 4,415 석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¹⁹⁾ 이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 후보는

6호 타인의 정보 훼손 및 타인의 비밀침해·도용 또는 누설, 그리고 제63조 1호 타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죄 등이 있다.

- 0) 동 행위는 정통방법 제62조 1,2,3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취급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부정사용, 제3자 제공 등, 동 조 6호 타인의 비밀침해·도용 또는 누설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누구든지 공선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교부된 선거인 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재산상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동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 제2항 2호 나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공선법 제109조 제 1항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해당, 동 법 제255조 제1항 19호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공선법 제230조 제3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공선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명(0.9%)²⁰⁾에 그쳐 후보자 개인별 홈페이지 운영 등 인터넷 선거바람이 크게 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廣域團體長을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 반면, 廣域·基礎議員 등은 발로 뛰어다니는 옛 선거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²¹⁾

(2) 경찰의 選舉 對備

공선법 제112조에 의해 선거일 180일전을 기산점으로 하는 寄附行爲 制限期間이 '01. 12. 15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선거 대책과 함께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자료를 하달, '02. 6. 13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였다.

선거일 60일전 4. 14과 선거기간 개시일인 5. 28을 기점으로 3단계로 구분, 각각 인터넷 검색 및 첩보수집활동 강화기간, 사이버 선거 전담체제 편성 운용기간, 사이버 선거 전담체제 강화 운용기간으로 정하고

勤務人員 등을 달리하여 대비하였으며, 특히 사이버 선거 전담체제는 총괄팀, 검색팀, 수사팀 등 3개의 班으로 구분²²⁾,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총괄팀은 매일 변동하는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실적을 취합·정리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 등을 사이버 요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색팀은 선거사범 발견 및 관련 첩보의 신속 입수, 증거 보존 등을 통해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를 24시간 순찰하였고, 수사팀은 112 방법체제와 연계하여 얼굴 없는 사이버 비방사범 등을 신속 검거할 수 있는 전담체제를 구축,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선거사범 6,247명의 7.4%인 462명의 사이버 선거사범(4,377건 중 436건으로 9.96%)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총선²³⁾에 비해 수치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0) 시도지사(16석) 55명, 구청장·시장·군수(232석) 750명, 비례대표(73석) 209명, 시·도의원(609석) 1,531명, 구·시·군의원(3,485석) 8,373명이 각각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main.jsp?GUBUN=hbm> 참조)

0) 광역단체장 13, 기초단체장 16, 광역의원 34, 기초의원 30

0) 2002. 5. 31자 한겨레 18면

0) 총괄팀은 24시간 사이버 공간의 선거관련 상황유지 및 선거 주무부서·선거상황실과의 연락체제 유지, 검색팀은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상태 검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 위협요소 발견·경보, 검색 대상 주요 사이트 목록 작성·하달, 주요 선거관련 사이버상 동향 파악, 수사팀은 해킹·바이러스·서비스 거부공격 등을 이용한 주요 선거방해사범 수사 및 지원, 언더그라운드 해커 동향 감시, 기타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 기술지원 및 지도 등을 각각 그 임무로 하였다.

0) 총선 당시에는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3,961명 중 3.7%인 148명(총 2,806건의 141건으로 5% 점유).

2. 사이버 선거사범 分析

(1) 措置別

전체 사이버 선거사범 462명 가운데 형사입건은 163명(구속 18명, 불구속 96명 등)이며 148명은 수사 중, 151명은 내사중결 되었다.

內査終結 사유는 PC방 이용, Log 기록 부재, 외국 IP 추적 곤란 등에 의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45건, 적법한 행위로 판정, 무혐의 처리된 경우가 104건, 동일사건 2건 등이다.

내사중결 건수가 형사입건 수에 비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상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한 모욕성, 비방성 게시 글들이 폭증한 가운데 공선법 제251조가 규정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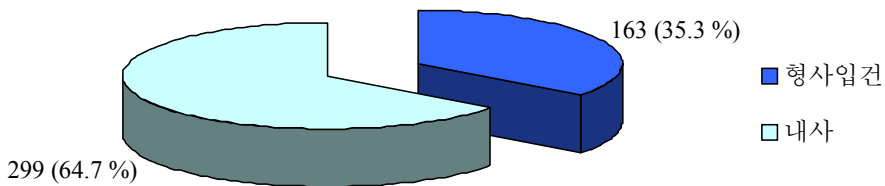
못하게 할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회 이상의 글을 게재하여 처벌된다’, 법률상 ‘비방’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등의 뚜렷한 기준이 없어 단순 ‘모욕’, ‘ 명예훼손’도 일단 수사에 착수하였다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²⁴⁾

한편,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 사이버 선거사범의 9.7%(45건)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반성으로 경찰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다각도의 추적 방법을 마련, 8. 8 국회의원 재·보선과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2) 類型別

사이버 선거사범 462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4.5%를 점하고

[표 1] 사이버 선거사범 조치별 분석



0)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내사에 착수하거나 검찰의 의견에 따라 입건을 할 경우라도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불과한 사안과의 구별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III. 1. 단속상 문제점에서 詳述.

있는 후보비방(298명)이다. 사이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성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공명선거를 위협하게 된 이유는 홈페이지마다 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유게시판’의 운영, 非實名 作成 게시글의 떠다님²⁵⁾ 등 우리나라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이버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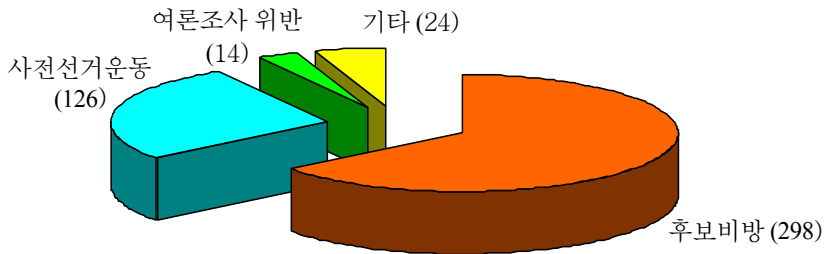
한편, 적극적인 지지의사 표명의 도를 넘어 타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단속된 사전선거운동 사범은 126명으로 전체 사이버 선거사범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지지를 호소하는 E-mail 발송, 선거운동기간 이전 공약사항 발표 행위가 대표적인 단속 대상으로 나타났다.

기타 행위로는 여론조사방법위반이 14건(3.0%), 공무원등 선거영향이 5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우려하였던 ‘해킹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 방해 행위’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다.

(3) 地方警察廳別

선거사범의 지역적 분포, 박빙의 판세를 뒤집기 위한 탈·불법 행위 등을 정확히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警察과 중앙선관위, 검찰의 통계가 모두 함께 계산되었을 경우 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게시글 삭제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²⁶⁾, 검찰의 입건 건수와 선관위·정당 등의 고발,

[표 2] 사이버 선거사범 유형별 분석



0) 타인의 글을 다른 홈페이지에 옮기는 ‘퍼옴’의 활용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자신의 글을 마치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관련 사항 대책 부분에 詳說.
 0) 중앙선관위는 5. 22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실적이 총 123건(고발 1, 수사의뢰 8, 경고 18, 주의 38, 삭제 58)이었다고 발표(중앙선관위 보도자료).

자체 인지 사건 등을 모두 ‘자체 실적’으로 공표하고 있어²⁷⁾ 경찰의 단속실적 발표와는 차이가 많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사범의 한 행태로서 표현되고 있는 만큼 경찰측의 자료만큼 자세한 분석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인데다 경찰측 단속 실적 역시 지역 실정 및 수사 요원 수와 의지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지역적 성향을 비교하기 곤란하다.

다만, 2000년 4. 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선거사범을 분리·정리할 정도로 ‘시작’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고 차후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수사대’가 정식 직제화되어 유능한 사이버 요원이 대폭 강

화되었을 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각 지방청별 전체 선거사범과 사이버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의 경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실적이 전체 선거사범의 16.5%가 넘지만, 대부분의 지방청은 평균 7 %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경남의 경우 각각 4.2 %, 4.5 %에 머물고 있다.

[표 3] 각 지방경찰청별 선거사범 단속실적²⁸⁾

0) 검찰은 5. 13 전국 지검·지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개최한 후 동일 현재까지 507명(구속 28, 수사중 365, 내사중 329)을 단속하였다고 발표.
0) [표 3]은 단속실적 총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구속, 불구속 등 입건율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경기·강원·전남·경북지방청 등이 50 %가 넘는 입건율을 나타냈음.

Ⅲ. 사이버 선거사범 團束上 問題點과 補完策

1. 團束上 問題點

(1) '후보자 비방' 判定基準 模糊

순수한 국어사전적 '誹謗' 개념은 '남을 헐뜯고 욕함'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기존 판례를 근간으로 정립해야 하지만,²⁹⁾ 금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음 두 사례를 참고할 때 '비방에 이르는 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애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충남 ○○에 사는 허 모는 '02. 3. 27부터 5. 29까지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동 게시판에 'A씨 카센타 여사장과 불륜', 'A 대통령 정권 각료명단', 'A는 미쳤다', '웃기고 자빠진 A' 등 대선후보 예정자

인 A씨 비방 글과 '○○동 공동묘지 술판춤 벌렸다는 B가 시장 후보 왜 말이나' 등으로 지방선거 후보 B 비방 글을 총 796회 게재하였고,

강원 ○○에 사는 조 모는 '02. 6. 5과 6. 6 이틀에 걸쳐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동 게시판에 'C 후보는 평상시 상당히 거만하고 국졸 학력임에도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허위 기재한데다 이미 없어진 경찰 방법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의원 후보의 자질이 없다'는 요지의 비방 글 2건을 2회 게재, 총 4회 게시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인 6. 11 허 모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 모 사안에 관해서는 구속할 것을 각각 지휘하였는데³⁰⁾, 비방 글의 내용과 횟수를 비교할 경우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반문하기 쉬운 사인

0) '후보자 비방'에 관한 판례는 주로 공선법 제251조의 단서인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2000도4469(2002. 4. 9), 99도4260 (2000. 4. 25), 97도956(1997. 6. 10), 96도1741(1996. 11. 22) 등].

동 법 제251조의 '사실'·'비방'의 의미에 관한 해석은 '92노215(1992. 6. 17)'에서 자세히 논하였는데, 요약하면, '후보자 비방죄'의 입법취지는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이른바 흑색선전 등 과열되고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특별히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기하러는데 있으므로 제251조의 '사실'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로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족하며, '비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즉 선거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공직의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0) 물론 구속된 조 모 사안의 경우 허 모 사건에 적용된 공선법 제251조(후보자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더욱 중한 동 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 데다, 구속 요건상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되었다.

들이다. 다음 표는 이번 지방선거기간 동안 경찰이 구속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2) '인터넷상 공약사항 게시'의 事前 選舉運動 處罰 問題

大法院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며 그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간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표 4] 제3회 지방선거 관련 拘束事件 例示

연번	피의자	범죄개요	게시횟수	구속일자
1	박 모(36)	인터넷 MBC 플라자에 대해 '○○○출신 D, 588 포주만도 못한 E' 등의 비방 글 게재	27 회	4.13
2	김 모(31)	광주 ○○○청 홈페이지에 'F는 구청장 재임시 부속실 여직원, 술집마담과 염문' 등의 글 게재	3 회	5.13
3	최 모(57)	○○구청 홈페이지에 'G는 남의 유부녀와 놀아나 한 가정을 파괴시킨 파렴치한' 등의 글을 게재	1 회	5.16
4	홍 모(59)	○○시청 홈페이지에 '이 정권의 후보자, 역적놈 H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등의 글 게시	27 회	5.16
5	김 모(48)	청와대 및 언론사 게시판에 'I는 순악질', 'J는 기회주의자' 등 글 게재	500 여회	5.17
6	박 모(38)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도 놈들의 교활한 선동' 등 K ○○시장 후보 비방 글 게재	506 회	6.3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대해서는 '장기의 1/2까지 가중(형법 제38조 제1항 2호)'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상기할 때 반드시 범정형이 중하다는 점 때문에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모 사안의 경우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하였으나, 허 모 사건의 경우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에 관한 판단 없이 '불구속' 수사를 무조건 지휘했다는 점에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비추어 판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³¹⁾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인 홍보·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취미·기호·관심사 등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음란물 게시 등 일부 법률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할 경우 누구나 자신의 소신 등을 피력하는 ‘표현의 자유’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선거운동기간전 공약 사항 게시행위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논하고 있으나 ‘몇 년 후 자신이 시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사안별 판단을 해야 할 만큼 공통적인 판단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3) 時代에 뒤떨어진 公選法 規定

1994년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3차례 개정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민사소송법 등 4

개 관련 법률을 4차례에 걸쳐 함께 개정하였다.

동 법률의 制定을 통해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선거 종류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선거 관련법률을 통합하여 선거 관련 절차 및 선거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조속한 시일에 訟事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짧게 정하는 등 선거 관련 법규정을 한데 모았다는데 意義가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조류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금번 선거에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³²⁾를 보였으며, 중앙선거위원의 有權解釋이 마치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看做되고 있어³³⁾ 일반 국민들이 선관위측의 의견을 묻는 사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선법 제268조는 동 법에 규정한 죄의 公訴時效를 6개월(단, 逃走의 경우 3년)로 정하여 공선법 위반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킹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 방해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

0) 2001도 2268(2001. 6. 28).

0)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의 인터넷 대담·토론회 방송 가능 여부, 인터넷 사업체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알림 홈페이지’ 운영 관련 등록비용 징수 가능 여부 등.

0)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선관위 위원 9명의 합의 등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 중앙선거위원가 비록 헌법 제7장(제114조, 제115조, 제116조)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구’라고 하더라도 ‘동 유권해석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발한다’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는 만큼 유권해석이 계속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률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효를 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³⁴⁾

또한 공선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하여 적용³⁵⁾되기 때문에 정당 내부 경선 출마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은 공선법에 의할 수 없다. 政黨 內部 競選이라도 일정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가 출마한다는 점과 공선법 규정에 의해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선법의 適用範圍를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補完策

(1) 健全한 사이버 文化 定着으로 公명선거 토대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들의 사용 목적, 구성요

소의 유형 및 체계도 등을 연구하기 위해 ‘홈페이지 활용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작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폐쇄되거나 생성되는 홈페이지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큰 폭으로 변하는 점을 상기하면 대체적인 비교 분석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를 내놓을 수 없다.³⁶⁾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각 국가별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사용되는지는 그 비율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비교는 가능하다고 본다. 즉 외국 홈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 나라와 한국의 인터넷 현실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체득할 수 있다.

우리 인터넷 현실에 있어서의 ‘익명 게시판’ 활성화는 음란물과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유포가 인터넷의 보급을 활성화했듯이 인터넷 토론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0) 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6조 비밀침해, 제366조 재물손괴 또는 정통망법 제62조 4호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 5호 대량의 데이터 전송 등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망 장애유발, 6호 타인의 정보 훼손 및 타인의 비밀침해·도용 또는 누설, 그리고 제63조 1호 타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죄 등이 있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결탁, 회원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해킹 등에 의한 인터넷 사업체 회원정보 유출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사용토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제공·매매 행위 등은 정통망법 제62조 1,2,3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취급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부정사용, 제3자 제공 등, 동 조 6호 타인의 비밀침해·도용 또는 누설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公選法 제2조(적용범위) : 이 법은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적용한다.

0)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간단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사이트 운영자들마다 방문해서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 등 공공단체 운영 사이트, 일반 기업 사이트, 개인 운영 사이트 등으로 세분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데다가 사이트 운영 목적, 국가별 실태 등은 비교적(?) 쉽다고 할지라도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의 국가별 비율 등을 필요로 할 경우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 인터넷은 虛數의 친구다.

했다. 그러나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한 ‘匿名性’은 ‘무슨 말이든 털어놓으면 그만이고, 싫으면 거길 가지 않는’ 無責任한 結果를 가져왔고, 바람직한 討論文化와 거리가 멀어지게 하였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청한 직후 또는 Off-line 매체와의 연계로 개인의 감상을 적는 ‘게시판’ 문화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를 꼽는다면, 우리 한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³⁷⁾, 그 대부분은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정강·정책 홍보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후보의 치부 드러내기에 주력하는 정당하지 못한 선거풍토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익명 게시판’이 가져온 弊害는 지금껏 논의한 사이버 선거 사범 단속결과에 나타나 있다.

2000. 10. 14. ‘사이버 警察廳’을 開廳한 이후 ‘사실 무근의 비난 해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2002. 1. 10 실명으로 전환한 ‘경찰청 게시판’의 경우처럼 한국어로 운영되는 모든 홈페이지 게시板的 ‘實名化’가 정착된다면, 비난을 위해 태어난 얼굴 없는

불만자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작성자의 접속 IP가 표시되도록 하였을 경우라면 ‘공명선거’ 나아가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믿는다.³⁸⁾

(2) 사이버上 選舉運動 最大限 保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³⁹⁾ 또한 過剩禁止의 原則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의 國家作用 限界로 目的의 정당성·方法의 적정성·法益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된다면 違憲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金權 등이 난무하는 부정·혼탁·과열 선거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는 후보자들에 관한 情報의 接近도 충분히 保障되어야 한다.

여기에 누구나 자신의 소신 등을 피력하

0)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할 수 없어 지극히 직관적인 논리긴 하지만, 거의 모든 홈페이지가 ‘게시판’을 가진 우리와는 달리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외국 사이트들은 ‘게시판’보다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 Webmaster에게 E-mail을 보내라는 메시지로 대신한다.

0) 언론사 게시판을 비교할 때, 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그 접속 IP를 표시한 연합뉴스 홈페이지는 여타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보다 사이버 선거사범에게 악용되는 예가 현저히 적었다.

0) 헌법 제37조 제2항.

는데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떠한 매체에도 뒤지지 않는 ‘表現의 自由’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해당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만큼 공통적인 판단 기준이 법률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비록 ‘내버려둔다’고 할지라도 ‘放置’ 개념보다는 ‘尊重’ 내지 ‘保護 次元’이라고 할 것이다.

‘20년 뒤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을 상상하여 自身을 弘報하는 行爲’와 ‘선거운동기간 1주일전 공약사항 게재행위’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못할 바에야 사이버 공간에서의 正當한 批判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保障하는 것이다.

(3) 인터넷 매체의 活動 保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 25 민주당 김근태, 노무현 고문을 초청, 인터넷 대담을 시도하던 ‘피플 475 닷컴’을 선거법 위반

혐의⁴⁰⁾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또 ‘오마이뉴스’는 2. 5부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7명을 초청, ‘열린 인터뷰’를 개최하여 인터넷 중계를 하려다가 서울시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네티즌을 중심으로 인터넷 매체의 언론사 인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여론이 확산⁴¹⁾되었고, 중앙선관위가 2. 18 정기간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므로 가능하다고 有權解釋을 하자 2. 19 ‘오마이뉴스’는 문화관광부에 ‘주간 오마이뉴스’를 정기간행물로 등록,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여 2. 20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을 시작으로 토론회를 개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인터넷 언론의 ‘機能性’과 ‘效用性’ 등을 감안, 언론매체로서 인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을 통해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 매체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0) 공선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간담회)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3호(선거운동기간전에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위반.

0) ‘오마이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강력히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2. 6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언론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직후인 2. 8 여야 국회의원 28명은 온라인 매체를 언론사로 인정하는 정기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맺음말 : 우리의 未來이기 때문이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민주당(3. 9~4. 27)은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黨內 競選’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다. 兩 政黨은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뜻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오던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여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 가능성을 선보였지만, 경선 참여자의 잇따른 포기 선언과 일방적인 독주로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⁴²⁾

그러나 횡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투표 참여율, 선거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투·개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개인 인증’

및 ‘보안’ 등의 문제를 해소한 진정한 ‘전자정부’의 구축 이후에는 ‘부재자 투표’와 같은 투표의 한 형태로 ‘사이버 선거’가 거론될 것은 자명하며, ‘사이버 선거’의 비율이 커갈수록 ‘사이버 선거사범’은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하나의 행위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겠지만, 선거 전반적인 문제로 부상될 蓋然性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그만큼 성장한 ‘인터넷 인프라’에 눈을 돌려 선거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이며, 더 나아가 관련 부처의 이해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난립된 여러 법률들을 ‘인터넷 통합법’으로 승화시키는 일도 실기해서는 안 된다.⁴³⁾ 現實에도 부합하지 못하면서 未來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0) 한나라당의 경우 3. 20 지역별로 1명 내지 11명 규모로 모두 50명의 인터넷 대의원을 선정하였으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48,672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민주당의 경우 4. 18. 09:00부터 4. 27. 16:00까지 인터넷 투표를 실시, 공모선거인단 3만5천명의 5% (전체 선거인단 7만명의 2.5%)인 1,750명의 투표값으로 환산, 각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여 당락 뿐만 아니라 전체 투표에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어 진정한 의미의 네티즌 투표라고 할 수는 없었다.
- 0) 명확한 법체계로서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으로 순서를 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형사법상 기본원칙으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정하여(헌법 12조 1항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 형법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동 조항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요구를 명시) 두고 있다고 하나 형법의 특별법, 그 특별법의 특별법의 형식으로 이름을 달리하는 법률을 양산, 수십 개의 법률을 나열하는 작업은 형사정책상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0년대부터 준비하여 1992년 시행한 프랑스 형법 개정작업을 참조, 형사법 통합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